



What's going on?: 미국 관세와 재정에 관한 6가지 질문

▲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02. 6454-4891

seunghoon.lee@meritz.co.kr

- ✓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 항소 및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 백악관은 철강관세 인상을 비롯, 다양한 관세 검토 중. 세수확보 수단이라는 고려
- ✓ 위법 판결 당일 채권금리가 오른 것은 위험선호보다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
- ✓ Big & Beautiful Bill, 4월 상원안 대비 적자 줄였음에도 연방채무비율 상승 우려 지속
- ✓ 트럼프 정책의 실물 충격이 미국 내수와 한국 수출 등에서 관찰되기 시작

1.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유: 미국 연방통상법원(CIT)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관세-10% 보편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 판시한 이유는 1) IEEPA가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범위를 벗어났고, 2) 일부는 국가비상사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 법원은 10일 이내에 관세 명령을 취소할 것을 주문

2.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은 즉각 항소, CIT주문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10% 보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적용 중. 백악관은 미국으로의 철강수입에 대한 관세를 6월부터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임을 언급했고, 다양한 조항을 근거로 관세부과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는 협상수단으로 관세가 유효한 수단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유의미한 세수 확보 재원이라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

3. 위법 판결 당일 채권금리 상승 원인: 위험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 때문. 위법 판결이 유효하다면 실효관세율은 16.4%에서 7.0%로 낮아지며 향후 10년간 관세發 세수도 2.2조 달러에서 0.6조 달러로 축소. 감세에서 비롯된 적자를 관세로 메울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난다 인식. 물론 관세율 하락으로 인플레 압력 및 경기위축 우려가 경감되는 순기능도 있음

4. One Big and Beautiful Bill 상정과 재정건전성 우려: 동 법안은 향후 10년간 기초재정적자 2.5조 달러 확대 유발. 4월 상원안(5.8조 달러) 대비 진일보된 버전. 2028년까지 연장된 일부 조항이 영구화되지 않으면 기초재정적자가 GDP대비 3% 이내에서 잡히지만, 베센트 공연대로 전체 재정적자/GDP를 3% 이내에서 잡을 수 없음. 더욱이 감세가 없었을 때(2035년 연방채무비율 118%)에 비해 비율이 높아져(123~130%)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계속 유발할 수 있음. 지출감축 확대나 경기회복 징후(부채비율의 분모 증가)가 보여야 채권시장 안심할 것임

5. 장기금리 안정을 위한 연준의 역할: 최근 장기물 금리상승은 실질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때문. 무역정책 불확실성에서 유발된 경기/연준 불확실성 + 재정적자 확대(=국채 공급부담) 우려가 맞물린 결과. 6월 FOMC에서 B/S 정책 변화 언급 있으면 그나마 도움될 것. 관세가 모든 그림을 망쳐 놓아 당장 금리인하 어려움

6. 관세 등 미국 정책의 실물충격: 조금씩 가시화. 1Q 내수성장을 하향 조정. 4월 소비부진/저축률 상승. 5월 말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상승 등이 징후. 당장 5월 고용은 문제가 없겠지만 6월 이후 경기적 실업 부상 여부 살펴야 함.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충격 지속. 대미 수출 감소폭은 줄었지만 일본/중국향 수출 감소폭 확대되며 교역량 위축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

Q1.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1) 5개 회사와 12개 주(州)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2) 미 행정부가 긴급 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상호/보편 관세 및 펜타닐/국경 문제를 들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국가안보, 외교, 경제에 대한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이를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률에 적시된 바는 없으나 재화 수입을 규제할 권한까지 위임 받았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에서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IEEPA에 근거한 관세 명령을 10일 이내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 ① 49년 연속 무역적자는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만약 이를 해결하려면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고 봤다.
- ② 재화 수입 규제 권한이 있더라도 제한 없는 전세계 대상 보복 관세는 법률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다.
- ③ IEEPA에서 부여된 권한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나, 실제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leverage)의 성격이 크다는 점도 위법성의 근거로 인정되었다.

요약하자면, 국민과 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리를 행정부가 남용했기에 행정명령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됨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표1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시 내용

구분	내용
판결 내용	CIT(연방국제통상법원), IEEPA에 의거해 부과한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 판시 1) 10% 보편관세, 2) 국가별 상호관세, 3) 펜타닐 관련 관세가 모두 해당
판결 이유	대통령이 IEEPA(1701, 1702조)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 대통령은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외환/은행거래 중단 및 통화/유가증권 수출입을 규제/금지할 수 있음. CIT는 재화수입 규제 권한 까지는 인정 1) 제한이 없는 Worldwide and Retaliatory Tariff는 위임 범위 밖 2) 49년 연속 무역적자/펜타닐 문제는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움 3) IEEPA에서 부여된 권한은 비상사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레버리지 목적이 커, 이 역시 권한 범위를 이탈
조치	CIT: IEEPA에 근거한 관세 명령 취소 및 영구금지 판결 10일 이내에 백악관이 관세 명령을 취소할 것을 주문

자료: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May 28, 2025).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Q2. 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백악관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이 국가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연방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또한 전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판시한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소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따라서 현재는 1) 상호 관세가 유예되고 2) 보편 관세 10% 및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및 부품) 관세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더해,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6월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1977년 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에 한정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안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품목에 걸 수 있다.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1974년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150일간 15%의 관세 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역법 301조도 사용할 수 있지만, USTR 주도의 조사가 필요하여 적용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것일까? 관세가 상대국과의 유효한 협상 수단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 다수 국가와 협상을 개시했고, 영국과는 초기 협상을 타결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3개국과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관세를 재정수입의 꽤 중요한 재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역적자가 줄어들길 원하는 트럼프가 관세를 재정수입의 중요한 재원으로 여긴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관세 부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못함을 인정한다면 터무니 없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표2 백악관 대응 및 추가 관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들

구분	내용
백악관 대응	백악관, 항소법원(Federal Appeal Court)에 즉각 항소 - CIT 판결 내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항소법원이 이를 인용했음 항소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 항고 예상
추가 관세 대안	Section 232: 국방 및 경제안보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대상 부과 중. 반도체, 의약품으로 확대 가능 Section 122: 국제수지 및 달러화의 안정성 (현재 미사용) - 150일간 15% 관세 부과 가능. 단기 방편에 그침 Section 301: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 (2018~19년 대중 관세 근거) - USTR 조사 착수 후 12개월 이내 대통령 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자료: Bloomberg, CNBC 등 외신보도 내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Q3. 관세 위법 판결 당일 미 국채금리의 상승은 위험 선호 때문인가?

관세 위법 판결 당일(한국 기준 5월 29일), 주가는 오르고 달러화는 강해졌다. 특히 달러화의 경우 장중 한 때 100을 넘기도 했다. 실효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리세션 가능성성이 낮아지고, 경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에 힘입어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 복원 기대가 생겨 났기 때문이다.

5월 29일 미 국채 10년 수익률은 장중 한 때 4.54%까지 상승(전일 종가: 4.48% 대비 +6bp)하였다. 위험 선호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작용했다는 시각에 무게를 싣고자 한다.

아래 표는 Yale 대학 산하의 Budget Lab에서 관세 정책을 업데이트하며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5월 13일 버전에 살고 있으며, 실효 관세율은 16.4%에 해당한다. 현재의 관세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2026~35년 관세로 인한 수입 증가분은, 후생 악화로 인한 동태적 세원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2.2조 달러에 달한다. 반면, 관세 위법 판결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효 관세율이 7.0%로 낮아지면서 추가 관세수입 예상치가 0.6조 달러로 줄어 든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인플레이션 충격은 현저히 줄고, 단기와 장기에 걸친 성장률 악화 가능성도 크게 경감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관세와 재정적자/국가채무 문제를 연계해 본다.

표3 미국 관세의 영향: 관세 수입, 실물 충격, 동태적인 장기 영향

	Conventional Score					Additional Dynamic Effects		
	2026-35		In Equilibrium					
	관세 수입 (십억달러)	% of GDP	PCE 물가지수 충격	인당 실질 가처분소득	실효 관세율 (%)	4Q25 GDP충격(%p)	장기 GDP 수준 충격	2026-35 동태적 세수 (십억달러)
4월 2일	보편/상호관세 적용	\$3,072	0.8%	2.31%	(\$3,789)	22.2	-0.87	-0.56% (\$582)
5월 13일	중국과의 관세 인하, 영국과의 trade deal	\$2,673	0.7%	1.73%	(\$2,836)	16.4	-0.65	-0.36% (\$394)
5월 29일	관세 위법판결	\$686	0.2%	0.58%	(\$951)	7.0	-0.18	-0.06% (\$101)

주: 트럼프2.0 직전의 미국 실효관세율은 2.42%였음

자료: Budget Lab at Yale (4월 2일, 5월 13일, 5월 29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Q4. Big and Beautiful Bill 이후 계속 재정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ne Big and Beautiful Bill"은 향후 10년간 2.5조 달러의 추가 기초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출 감축 내용이 사실상 부재했던 4월 상원안(Senate Instruction: 10년간 5.8조 달러 추가 기초재정적자)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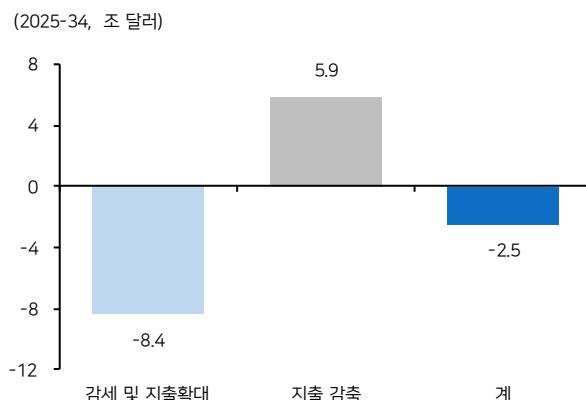
- ① 감세 법안 연장이 없었을 때, 즉 재정문제를 견드리지 않았을 때 2035년 연방채무비율 추정치 118.5%(CBO 3월 Baseline)에 비해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연방채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② 이 법안에 따르면 "기초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내에 묶일 수 있다.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언한 GDP대비 재정적자(이자비용 포함) 3% 목표에는 못 미친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만 GDP의 3%를 넘기에, 이 기준에서 기초 재정수지는 균형 이어야 한다. 2.5조 달러의 기초 재정적자를 상쇄할 요인으로, 행정부나 시장은 관세를 기대했을 것이다.

③ 2028년까지 일몰 기한을 미뤄놓은 법안이 영구화되면 기초재정적자는 GDP대비 3%를 계속 넘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이 상원에서 재심의를 받을 때 적자가 다시 늘어날 위험도 있다. 여기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각인시켰다.

관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때, 미 국채 시장이 안심하려면 1) 1993~2000년 Clinton 행정부 방식의 지출 감축 강화 혹은 2)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7~8월 최종 의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림1 One Big Beautiful Bill: 감세/지출 확대 vs 지출 감축



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Budge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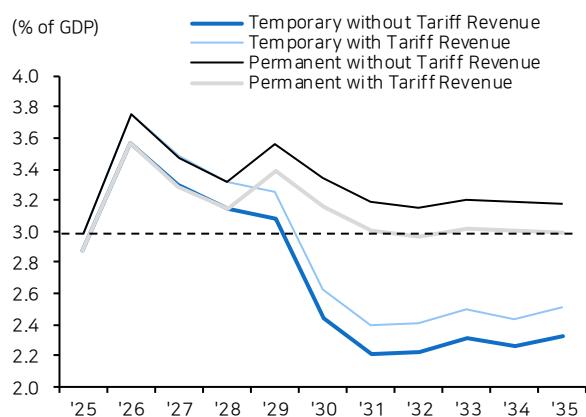
표4 One Big Beautiful Bill(BBB): 주요 감세/지출 삭감 항목

구분	금액 (2025~34년, 십억달러)
인하된 소득/법인세율 계속 적용	-2,177
최저한세 개혁 내용 계속 적용	-1,414
공제 확대 내용 계속 적용	-1,308
가계 사업자 소득 20% 공제 계속 적용	-820
아동수당 확대 내용 계속 적용	-797
IRA 보조금 삭감	131
전기차 세액공제 삭감	191
에너지, 생산, 제조업 공제 삭감	237
지방세 공제 최대 3만 달러*	916
개인/피부양자 소득공제 축소	1,870

주: * 공제액 한도를 정함에 따른 세수 확보의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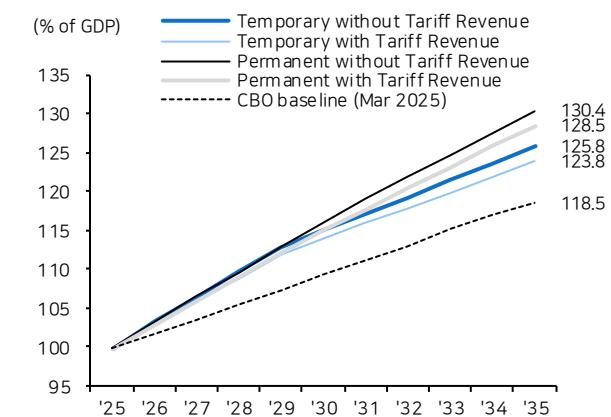
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Budge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시나리오별 BBB 법안의 미국 기초재정적자 경로



자료: Budget Lab at Ya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시나리오별 BBB 법안의 미국 연방채무비율 경로



자료: Budget Lab at Ya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Q5. 연준이 장기물 금리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10년물 수익률의 고공행진을 견인하는 것은 실질금리, 기간 프리미엄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다. 이는 지금 현금을 포기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데 요구되는 보상으로 정책 불확실성, 국채 수급 불안(공급 물량부담) 등의 이슈가 불거질 때 커진다. 지금의 프리미엄 상승은 ① 관세 등 무역정책, ② 무역정책에 종속적인 경기 및 연준 통화정책(역시 불확실성의 영역), ③ 재정건전성 문제 등 다양한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는 정책은 연준의 국채 매입일 것이다, 아직은 느린 속도의 QT가 진행 중이다. 6월 FOMC에서 B/S 정책방향 힌트가 나온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정책금리 인하도 시중금리 하락 요인이지만, 관세가 그림을 다 망가뜨렸다. 4월 PCE 물가상승률은 2.1%로, 만약 관세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없었다면 곧 금리인하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 지금은 인플레를 한 번 맞고 갈 태세다. 선물시장은 9~10월이 되어야 연준이 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4 미국채 10년물 분해: 실질금리 vs 인플레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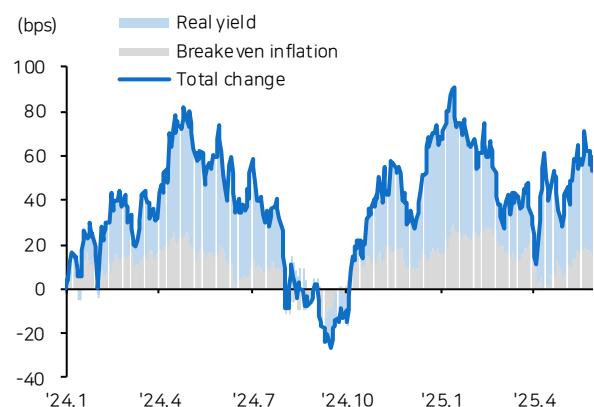


그림5 미국채 10년물 분해: 단기 정책금리 기대 vs 기간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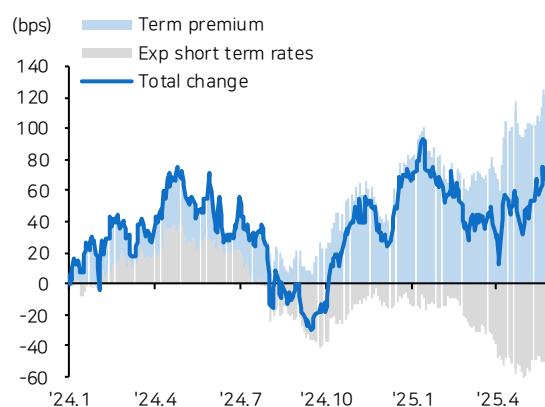


그림6 연준 보유채권 잔액: 미 국채 vs M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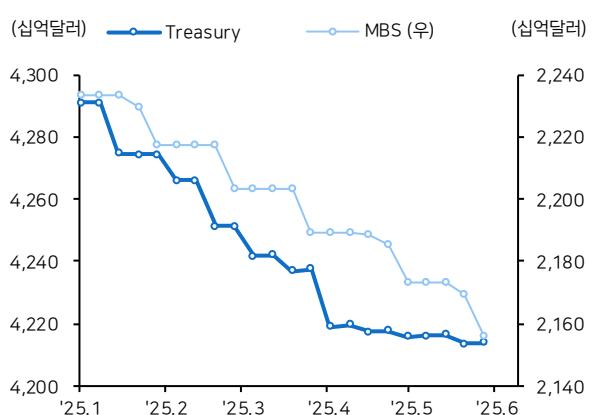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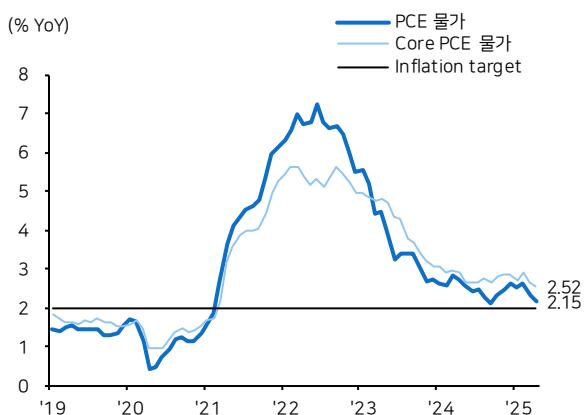


그림7 미국 PCE 물가지수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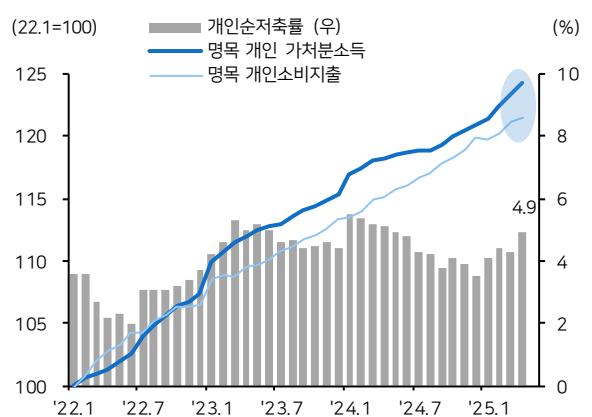


Q6. 관세를 포함한 미국 정책의 실물 충격은 들어오고 있나?

조금씩 보이고 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며칠 사이 4.40%까지 내려 온 것도 미국 경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1분기 GDP 수정치는 0.2% 역성장(QoQ SAAR)으로 상향 조정(속보치 -0.3%)되었으나, 민간소비 기여도가 1.2%p에서 0.8%p로, 민간 내수성장률이 3.0%에서 2.5%로 낮아지면서 걱정이 생겼다.

4월의 경우, 개인 가처분소득이 전월대비 0.8% 늘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소비가 0.2% 증가에 그치면서 저축률이 4.9%까지 올랐다(3월 4.3%). 노동시장도 5월 말 들어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고개를 들었다. 5월 고용 집계 주간인 둘째 주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6월 이후 경기적 실업의 표면화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다. GDP 자체는 이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 수입이 급감하면서 순수출기여도를 (+)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

그림8 미국 명목 개인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개인순저축률



자료: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신규 및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수출도 5월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이 0.8% 증가하는 등 겉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2개월째 관세의 부정적 충격에 노출되고 있다. 일평균 국가별 수출은 미국 (-5.9%), 일본 (-6.6%), 중국 (-6.3%) 향으로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평균 대미 수출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4월: -10.7%),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주요국 향 수출이 동반 악화되는 교역량 위축의 징후일 까봐 걱정스럽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성장에 타격을 더 입게 되는 구조다. GDP대비 재화 수출이 36%로, G-20 회원국 중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5월 수출이 이 정도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영향이 크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2월(-3.0%)을 바닥으로 3~5월(11.9% → 17.2% → 21.2%)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선박/반도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초라하다. 4월 -4.1%에서 5월에는 -5.2%로 감소폭이 커졌다. 그나마 휴대폰, 화장품, 바이오가 효자다.

그림10 한국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미국 ISM 지수 vs 한국 선박, 반도체 제외 수출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지역별, 품목별 일평균 수출 증감률 (24년 4월 ~ 25년 5월)

	'2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지역별														
미국	21.5	12.9	25.9	2.8	13.3	8.5	(1.4)	(1.1)	5.4	8.7	(6.0)	4.5	(10.7)	(5.9)
EU	(9.1)	(2.8)	(12.5)	(7.4)	18.0	9.9	0.9	5.2	15.2	6.2	(14.4)	12.2	13.4	6.4
일본	15.5	(0.7)	(0.3)	3.3	8.0	3.6	(7.2)	2.2	6.3	11.6	(11.1)	4.3	(9.3)	(6.6)
중국	7.6	5.1	9.1	7.8	10.1	11.0	5.7	3.9	8.4	3.3	(8.2)	(2.2)	(0.4)	(6.3)
ASEAN	7.2	18.5	19.6	5.0	3.0	4.8	(8.9)	4.6	2.2	17.7	4.7	11.0	0.2	1.0
중동	(1.3)	(5.9)	9.2	46.8	(0.8)	20.7	(5.2)	22.6	(0.7)	(3.8)	11.6	15.7	(2.5)	(6.1)
중남미	35.1	22.5	(2.7)	22.1	31.2	(1.1)	15.6	25.0	15.8	11.8	(12.8)	(15.3)	(0.5)	(9.6)
품목별														
반도체	52.7	50.9	61.4	41.2	41.7	44.0	33.9	36.5	31.5	29.7	(9.6)	14.4	12.3	24.0
평판디스플레이	13.8	13.2	34.8	(3.8)	(2.9)	0.5	(26.2)	(18.6)	(3.3)	0.8	(12.2)	5.2	(11.5)	(16.0)
무선통신기기	8.9	6.8	11.0	44.1	53.3	22.3	14.2	0.7	16.0	8.7	17.9	14.3	21.3	6.3
가전	6.9	4.5	6.7	2.5	(2.9)	(9.8)	0.2	(10.2)	3.7	(0.7)	(10.8)	(5.5)	(8.5)	(13.0)
컴퓨터	71.7	45.1	69.9	52.0	187.6	143.6	47.1	132.0	118.1	37.8	19.8	36.1	(18.9)	4.8
자동차	7.8	2.3	6.5	(14.6)	(2.4)	10.1	0.6	(9.9)	(5.3)	(3.5)	9.7	3.3	(7.8)	(2.2)
자동차 부품	0.6	(7.5)	(5.5)	(3.8)	(1.6)	(2.0)	0.9	(4.2)	5.6	(0.9)	(10.7)	(1.4)	(0.7)	(7.2)
선박	3.4	111.6	(35.6)	(40.3)	82.1	83.9	(31.8)	78.2	(15.6)	17.4	(16.6)	54.8	12.4	6.8
일반기계	(2.3)	(6.1)	(1.9)	10.6	(4.0)	(9.1)	(12.3)	(15.6)	(7.4)	(5.7)	(18.2)	(1.2)	(10.0)	(3.2)
철강제품	(7.8)	(14.0)	(19.1)	(10.9)	0.0	(0.0)	3.7	5.4	2.9	14.1	(10.8)	(8.8)	1.0	(10.3)
석유화학	10.6	5.2	19.7	11.1	8.7	3.7	5.2	(1.6)	1.9	6.7	(7.2)	(7.6)	(15.5)	(19.0)
석유제품	15.6	4.0	18.2	8.7	0.1	(14.4)	(37.4)	(15.1)	(11.6)	(13.8)	(18.5)	(27.1)	(17.9)	(19.0)
섬유류	(1.2)	(0.9)	(5.0)	(4.9)	(3.0)	(3.9)	(2.6)	0.1	(4.4)	0.7	(8.4)	(3.9)	(7.4)	(9.3)
바이오헬스	18.7	16.0	0.5	21.3	42.0	15.5	13.1	24.4	(2.5)	19.5	8.1	9.4	9.5	6.9
이차전지	(21.8)	(21.2)	(14.9)	(6.3)	(2.6)	(7.4)	(13.2)	(23.2)	(13.6)	6.1	(16.3)	(2.6)	8.8	(16.7)
화장품	23.1	11.7	12.9	21.8	20.6	15.9	29.2	22.9	25.5	13.5	15.1	23.6	15.7	1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6 한국 수출 증감률 (24년 4월 ~ 25년 5월)

(% YoY)	비중(%)*	'2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YTD*
전체	-	13.6	11.5	5.6	13.9	10.9	7.1	4.6	1.3	6.6	(10.1)	0.7	2.8	3.7	(1.3)	(0.8)
일평균 (선박제외)	-	11.1	8.9	13.0	7.0	13.2	12.5	(0.2)	5.7	6.6	7.9	(6.2)	5.2	(0.6)	1.0	1.3
일본	-	11.4	6.9	15.4	8.7	11.1	10.7	1.5	3.7	8.1	7.4	(5.8)	3.3	(1.1)	0.8	0.8
지역별																
미국	18.5	24.2	15.5	17.7	9.4	10.9	3.3	3.3	(5.2)	5.4	(9.4)	0.9	2.2	(6.8)	(8.1)	(4.3)
EU	10.6	(7.1)	(0.6)	(18.2)	(1.5)	15.6	4.6	5.7	0.8	15.2	(11.5)	(8.1)	9.7	18.4	4.0	2.5
일본	4.2	18.0	1.6	(6.8)	9.9	5.8	(1.3)	(2.8)	(2.0)	6.3	(7.0)	(4.6)	2.0	(5.3)	(8.7)	(5.0)
중국	18.2	10.0	7.5	1.9	14.7	7.9	5.7	10.7	(0.5)	8.4	(13.9)	(1.4)	(4.4)	3.9	(8.4)	(5.0)
ASEAN	17.4	9.5	21.3	11.8	11.7	0.8	(0.2)	(4.5)	0.2	2.2	(1.9)	12.4	8.5	4.6	(1.3)	4.3
중동	2.9	0.9	(3.7)	2.1	56.1	(2.8)	15.0	(0.7)	17.5	(0.7)	(19.8)	19.7	13.1	1.7	(8.2)	0.8
중남미	4.1	38.1	25.4	(9.1)	29.9	28.4	(5.8)	21.1	19.8	15.8	(6.8)	(6.4)	(17.2)	3.8	(11.6)	(7.8)
품목별																
반도체	21.2	56.1	54.4	50.9	50.2	38.8	37.1	40.3	30.8	31.5	8.1	(3.0)	11.9	17.2	21.2	11.4
평판디스플레이	2.4	16.3	15.8	26.0	2.4	(4.9)	(4.3)	(22.7)	(22.0)	(3.3)	(16.0)	(5.8)	2.9	(7.6)	(18.0)	(9.1)
무선통신기기	2.4	11.3	9.3	3.8	53.3	50.1	16.5	19.7	(3.5)	16.0	(9.4)	26.5	11.8	26.5	3.9	10.7
가전	1.1	9.3	6.9	(0.3)	9.0	(5.0)	(14.1)	5.0	(13.9)	3.7	(17.3)	(4.3)	(7.6)	(4.6)	(14.9)	(9.7)
컴퓨터	1.6	75.5	48.5	58.8	61.7	181.6	132.0	54.1	122.3	118.1	14.8	28.5	33.1	(15.3)	2.3	11.9
자동차	10.9	10.2	4.7	(0.4)	(9.2)	(4.4)	4.9	5.4	(13.6)	(5.3)	(19.6)	17.7	1.0	(3.8)	(4.4)	(2.5)
자동차 부품	3.3	2.8	(5.4)	(11.7)	2.3	(3.7)	(6.7)	5.7	(8.2)	5.6	(17.4)	(4.2)	(3.6)	3.6	(9.4)	(6.1)
선박	4.2	5.7	116.6	(39.8)	(36.5)	78.3	75.2	(28.5)	70.8	(15.6)	(2.2)	(10.5)	51.4	17.3	4.3	12.1
일반기계	7.2	(0.1)	(3.9)	(8.3)	17.7	(6.0)	(13.4)	(8.1)	(19.1)	(7.4)	(21.4)	(12.2)	(3.4)	(6.1)	(5.3)	(9.7)
철강제품	4.8	(5.8)	(12.0)	(24.3)	(5.2)	(2.0)	(4.8)	8.6	1.0	2.9	(4.9)	(4.2)	(10.8)	5.4	(12.4)	(5.5)
석유화학	6.6	13.0	7.6	11.9	18.2	6.4	(1.2)	10.2	(5.7)	1.9	(11.1)	(0.4)	(9.7)	(11.8)	(20.8)	(10.8)
석유제품	6.5	18.2	6.5	10.5	15.6	(2.0)	(18.5)	(34.5)	(18.6)	(11.6)	(28.2)	(12.5)	(28.7)	(14.3)	(20.9)	(21.1)
섬유류	1.5	1.0	1.4	(11.2)	1.2	(5.0)	(8.5)	2.0	(4.1)	(4.4)	(16.0)	(1.6)	(6.0)	(3.4)	(11.4)	(7.8)
유망 품목																
OLED	1.8	6.4	11.6	30.8	3.4	(3.2)	(1.1)	(26.4)	(23.4)	6.8	(5.8)	2.2	15.2	(1.3)	(14.4)	(1.3)
SSD	1.3	107.2	60.5	81.2	82.5	250.0	168.7	67.8	194.4	160.5	27.3	38.8	43.4	(21.6)	6.9	17.5
MCP	5.5	119.6	112.2	74.6	108.8	100.4	83.4	88.8	78.1	71.6	14.1	(0.9)	34.2	31.8	48.5	26.9
바이오헬스	2.4	21.4	18.7	(6.0)	29.0	39.1	10.0	18.5	19.2	(2.5)	(0.4)	16.1	7.0	14.3	4.5	8.3
의약품	1.7	29.5	34.4	(5.5)	41.5	73.8	19.8	25.4	35.6	(4.6)	10.8	25.0	13.3	21.8	14.1	17.0
이차전지	1.1	(20.0)	(19.4)	(20.4)	(0.3)	(4.6)	(11.8)	(9.1)	(26.4)	(13.6)	(11.6)	(10.1)	(4.8)	13.6	(18.6)	(6.4)
화장품	1.7	25.8	14.3	5.6	29.6	18.1	10.4	35.4	17.8	25.5	(5.4)	23.6	20.8	20.8	9.3	13.6

주: * 2025년 1~5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